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4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9.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u>고등교육기관</u>----- ----- -----

④ (현행과 같음)

력을 갖추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학 기간 중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이수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는 취약계층 등의 학자금 상
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130 이하인 사람 등을 이자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로서,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844만원 이하)의 경우,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2026년 상환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총급여 3,037만원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가 면제됨.

참고로,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학자금 지원 5구간 이
하)에 대하여 졸업 후 2년의 범위에서 이자를 면제하였으나, 2026년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되고, 졸업 후 2년으로 정한 이자면
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되었음.

- 또한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1660호)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
학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학자금 지원 8

구간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299만원 이하)까지 이
 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현황>

구분		제16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3항		
		1호~4호	5호	6호	7호			
「취 업 후 학 자 금 상 환 특 별 법」	2021.6.8. 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	-	-	기준 중위 소득 이하 인 자		
	2023.12.26. 개정							
	2025.11.11. 개정		「아동복지 법」에 따 른 자립지 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			비수도권 지역 대학 에 재학 중 인 기준 중 위소득 100 분의 200 이하인 자	
	2026.7.1. 시행							
	2026.11.20. 시행예정							

□ 이자면제 인원은 2024년 41만 2,879명에서 2025년 46만 6,984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자면제 금액도 같은 기간 166억 5,600만원에서 318억 9,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46만 9,179명에 대하여 188억 6,700만원의 이자가 면제되었음.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4년		'25년		'26년(6월 기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	1항 (13.5.10.)	군 복무자	26,342	806	10,153	455	8,197	231
	2항 1~3호 (22.1.1.)	수급자/차상위	82,374	1,985	91,425	4,572	94,447	2,966
	2항 4호 (22.1.1.)	다자녀 가구	163,886	8,880	170,820	14,491	174,308	8,275
	2항 5호 (26.5.12.)	자립지원대상자	-	-	-	-	209	0.5
	3항 2항 6호 (24.7.1.) (26.7.1.)	중위소득 100%→130%	133,011	2,705	157,970	8,046	161,201	5,235
	2항 7호 (26.11.20.)	지역대학 중위소득 200%	-	-	-	-	'26.11.20. 시행 예정	
	4항 (24.7.1.)	의무상환유예	24,123	1,292	34,502	3,084	29,265	1,480
	소계		397,201	15,668	447,113	30,648	452,491	18,188
합계			412,879	16,656	466,984	31,898	469,179	18,867

자료 : 교육부
각 인원의 합과 합계 인원의 차이는 중복 자격자로 발생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이자면제 요건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들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규정(법률 제21660호)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0 이하인 대학생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는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이자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수도권 대학의 7~8구간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개시자는 약 8만명이고, 이들의 대출잔액은 약 3,506억원임. 이 중 다자녀 가구 등 기존 이자면제 대상과의 중복을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이자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5만 2,000명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7~8구간의 지역별 현황(‘26.6월 기준) >

(단위:억 원, 만 명)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전체	의무상환 미개시자	전체	의무상환 미개시자	전체	의무상환 미개시자	전체	의무상환 미개시자
7구간	4,234	10.9	1,848	1,512	4.7	3.7	2,385	1,925	6.2	4.9
8구간	5,077	11.5	2,321	1,994	5.2	4.3	2,756	2,318	6.4	5.3

자료 : 교육부

주: ‘의무상환 미개시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아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

지역대학 7-8구간 이자면제 법 시행 시 이자면제 대상 인원(중복자격자 제외) : 6.3만명

수도권 대학 7-8구간 이자면제 확대 될 경우 이자면제 대상 인원(중복자격자 제외) : 5.2만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확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지역대학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구조와 정책적 신호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임.

관련 법률안의 심사 당시에도 지원대상을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대학 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와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은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으나, 종전 법률안의 심사 당시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수도권 대학생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점과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원대상을 다시 변경하는 것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수도권 대비 생활·교육 인프라, 취업률, 임금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